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

제정 2015. 1. 14. 폐지 2023. 7. 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」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 중 내부공익신고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·처리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내부공익신고(이하 "신고"라 한다)"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행동 강령」을 적용받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본교의 부패행위를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부패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-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2장 신고 등의 접수 및 처리

- 제3조(신고 등의 접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.
 - 1. 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 '위반행위 신고서'를 제출한 경우
 - 2. 국민권익위원회,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신고된 부패사항이 본교로 이첩된 경우
 - 3. 본교의 부패사항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담 당부서로 이첩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,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,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. 제4조(신고 사항의 확인) ①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.
- 제5조(신고의 이첩)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제6조(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) ①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 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진술기회 부여 및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할 수 있다.
- 제7조(신고·확인 등의 편의 제공) ① 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.
 - ② 신고자, 신고대상자, 관계 공직자,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방문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 - ③ 신고의 편의를 위해 감사담당부서 내에 신고를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8조(신고의 취소)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취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때,

취소 이유가 타당한 경우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취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의 부패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고 사항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.
- 제9조(신고 사항의 처리) ①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사 규정」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.
 - ② 제1항의 심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, 관계 공직자, 참고인,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에 제18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,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⑤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0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사 규정」을 따른다.

제3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등

- 제11조(비밀 보장의 공지) ①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사람(이하 '신고자 등'이라 한다)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 - ② 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을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- 제12조(신분 비밀 보장 등)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중 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임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신고자 등의 성명, 사진, 근무처 등 인적사항
 - 2.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신고서, 증거 등 신고·조사 관련 자료

- 3. 그 밖에 신고자 등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사항
- 제13조(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)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,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.

제4장 신고자 포상 및 보상

- 제14조(포상 및 보상) ① 총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 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「상훈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본교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.
 -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보 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한다.
- 제15조(보상심의위원회) 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
 - 2.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포상·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- 제16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당연직 위원 4명 및 위촉직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과장, 총무과장, 재무과장, 기획평가과장으로 한다.
 -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·회계전문가·감정평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. 제17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·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인, 관련 공직자, 조사담당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, 신청인, 관련 공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8조(포상·보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)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, 보상금의 지급 사유,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제한, 보상금 신청 및 접수 등,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절차 등, 이의신청의 접수·처리, 지급시기, 보상금 등의 환수에 관 한 사항은 「교육부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」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 용한다.

부칙<제268호, 2015. 1. 14.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755호, 2023. 7. 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.